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신교선 의원	소 속	평창군의회
답 변 자	평창군수 (재무과장)	일 자	질의 : 2003년 월 일 답변 : 2003년 월 일
<p>【 질의요지 】</p> <p>○ 2003년도 군금고계약에 의한 점검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고계약서 사본 첨부)</p>			
<p>【 답 변 】</p> <p>" 별 첨 "</p>			

2003년도 금고검사 결과

- 기 간 : 2003. 3. 3 ~ 3. 19
- 대 상 : 28개소(군금고1개소, 수납대행점 27개소)
- 점 검 자 : 징수담당외 1인
- 점검내용 :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약정사항 이행여부

□ 검사결과

- 금번 금고검사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점 검사한바
 - 일일결산, 영수필통지서 송부, 자금이체등 지난해 지적된사항에 대하여 대다수 개선조치 되었으나 담당자가 바뀐 일부 대행점의 경우 업무 인계 소홀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었으며,
 - 수납금에 대하여는 도세, 군세,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통합 관리하고 있는 대행점이 많았고, 특히 영수필 통지서 송부에 있어 일부 소규모 대행점의 경우 예산 및 인력부족등으로 지연 송부시킴으로써 자금이체 및 소인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등 지난해 이어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 한편 군세 수납후 대행점에서 군금고를 거쳐 수납정리 되기까지 최저7일, 최고15일 소요되어 독촉장 발부등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금리하락, 수납규모 소액등으로 대행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이체일 단축을 위한 갱신계약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상기 지적사항 해결을 위하여는 영수필 통지서 송부를 위한 등기비용 보전대책마련, 송부방법 개선(전산화등)등 업무개선 및 수납대행점 지원 조치와 금고 및 대행점에 대한 수시지도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었음.

□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군 금 고 > ----- 1개소

1. 공금 금고불입 지연 : 수납대행점으로부터 이체된 공금은 당일 군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나 영수필 통지서 송부지연등으로 군금고 불입 지연

2. 특별회계 종류별 계좌 미구분

→ 현지 시정조치 및 변상금 부과 (영수필통지서 송부지연 방지를 위한 대행점 등기비용 지원문제 협의필요)

< 수납대행점 > ----- 27개소

1. 수납금 지연이체 : 10 개소

→ 변상금 57,310원 부과(부과내역 별첨)

* 2002년도 : 17 건 176,870원부과

2. 영수필 통지서 송부지연 : 영수필 통지서는 수납일 익일까지 군금고에 송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체일 또는 익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도암원협, 평창축협도암지소, 봉평농협용전지소, 미탄신협, 평창농협계촌지소)

→ 자금 이체일 전일까지 송부토록 현지지시 및 문서통보

※ 현 수납금 이체 및 영수필통지서 송부현황

< 우체국의 수납대행점 >

수납분 정리 (5일단위) → 군금고 이체(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

→ 군금고 정리후 일반회계 통장입금

※ 영수필 통지서 → 대다수 이체전일 송부, 일부 이체일 또는 익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

<우체국 >

수납분 정리(월 ~ 토요일) → 군금고 이체(다음다음주 월요일)

→ 군금고 정리후 일반회계 통장입금

※ 영수필 통지서 → 이체전일 또는 이체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

3. 일계 미작성 및 관리소홀 : 일일 수납분에 대하여는 일계표를 작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미작성 및 관리소홀
(일계미작성 : 도암농협유천지소, 관리소홀 : 봉평농협용전지소, 봉평농협장평지소, 도암농협유천지소, 횡계새마을금고)

→ 현지시정조치 및 문서통보

4. 공금 이자 미계산 및 미불입 : 수납된 공금 이자는 상반기(6월말), 하반기(12월말) 이자를 계산 군금고 입금 하여야 하나 이자 미계산(횡계마을금고) 및 산출은 하였으나 불입 미이행(대관령신협)

→ 이자 불입조치 및 변상금 부과

5. 계좌 미분류(도세, 군세, 특별회계) 및 통합송금 : 수납금은 도세, 군세, 특별회계로 분류(계좌분류설치)관리하고 자금이체시 해당 계좌에 송금하여야하나 한계좌에 통합관리하고 한계좌로 송금(공통 - 평창농협, 대화농협, 진부농협, 횡계새마을금고, 도암원에 농협, 도암농협제외)

→ 현지시정조치 및 문서통보

※ 계좌개설시

도세는 사업자등록번호 221-83-00013로 강원도지사명의로 개설
군세, 특별회계는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로 평창군수명의로 개설

※ 자금이체시

도세는 228-01-007991 계좌로 송금
군세는 228-01-004711 계좌로 송금
특별회계는 228-01-009688 계좌로 송금

□ 자금이체 지연 및 변상금 부과내역

금고(수납대행점)	이체금액	지연일수	변 상 금	비 고
계	96,526,237	16	57,310	
평창군금고	47,735,408	1	24,840	
평창축산업협동조합	4,600,214	4	4,480	
평창농협방림지소	8,552,118	3	6,240	
평창축협대화지소	1,511,680	1	780	
봉평농협장평지소	3,765,680	2	3,500	
평창축협봉평지소	706,650	1	360	
봉평농업협동조합	5,625,220	1	2,920	
평창축농협진부지소	16,970,930	1	10,520	
진부농업협동조합	6,723,995	1	3,500	
도암농협유천지소	333,840	1	170	
대관령신용협동조합			1,090	상.하반기 이자

평창군 금고업무취급계약서

평창군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평창군수를 "갑"(이하"갑"이라 칭한다)이라 하고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을 "을"(이하"을"이라 칭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취급범위)

"갑"은 평창군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제 2 조(취급범위)

군 금고의 주요 취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세입금의 수납업무
2. 각종 세출금의 지출업무
3. 세입세출외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출업무
4. 유가증권의 보관업무
5. 기타 "갑"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 3 조(법령, 조례, 규칙 등 준수의무)

"을"은 이 계약에 정한 조항 이외에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책임)

"을"은 "갑"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5 조(저축성 예금 예치)

"을"은 "갑"의 금고 보관 현금 중 "갑"의 금고 운용 계획에 따라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및 저축성예금(이하 저축성 예금이라 한다)등으로 대체 예치 할 수 있다.

제 6 조(이자지급)

1. "을"은 "갑"의 보관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 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2. 제5조 후단의 경우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 종목에 의한 계산 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 당일에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 7 조(지급명령등)

1. "을"은 "갑"의 지급명령(통산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격지간의 송금에 있어서는 익일 오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을"은 송금되는 자금을 지급명령일로부터 3일 이상 지연송금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리19%의 변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세입금세입)

1 각종 세입금은 수납 즉시 금고에 예입하여야 한다. 단 수납대행정 수납본에 대하여는 이체당일에 금고에 예입하여야 한다. (이체일이라함은 수납대행정의 이체일을 뜻한다.) 다만, 정기본 지방세에 대하여는 1일 이내에 예입하는 것으로 한다.

2 도금고로부터 군금고로 송금한 각종 자금을 군지부 착금 당일 군금고 예입을 원칙으로 하되 착금 당일 초과 예입시 **내지항을 포함하여 제7조제3항에** 정한 변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지방세입금에 포함된 국세는 국세수납 절차에 따른다.

4 강원도 세입금은 강원도세입금수납대행정계약에 따른다.

제 8 조의1(일일현황통보)

"을"은 매일 세입세출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과 현금상황을 표시한 세입세출일계표와 세입금내역, 세입금전산수납처리화일을 다음날 오전 09:30까지 장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자금배정)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출장소포함)의 자금배정은 배정지시서 접수즉시 송금한다.

제 10 조(일시 차입금 및 기채)

1 "을"은 "갑"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위하여 차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농협중앙회 여신 규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기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일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군금고 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1 "을"은 군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을"의 영업장에 군금고 업무전담 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정하는 장소에 농협 군청 출장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군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3 금고의 업무 시간과 휴일은 "갑"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다만 "갑"이 특별히 출납을 요구한 때와 제7조(지급명령등등) 제8조(세입금예입) 제9조(자금배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은 예외로 한다.

제 13 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기간이라도 "을"에 대하여 군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14조의 기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갑"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때

2. "을"이 군금고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을"이 계약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과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갑"의 사정 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한 때

제 14 조(계약해지시 인계)

제13조의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출납계산서와 수입지급 만료에 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보관현금과 같이 1년 1회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5 조(계약해지시 사전승락)

"을"이 이 계약기간내에 군공고 업무취급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4조의 예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 16 조(금고검사)

"갑"은 금고 검사를 년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계약내용 변경)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8 조(계약조문 해석상 이의)

본 계약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기관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 19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만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2년씩 계약기간이 연장 된다.

부 칙

1. 본 계약은 2003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2.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2. 8. 30

(갑) 평 창 군



(을)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

